

# 무배당 추가납입특약

##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

제 1조 [ 목적 ]

제 2조 [ 용어의 정의 ]

## 제2관 보험금의 지급

제 3조 [ 특약의 체결 및 소멸 ]

제 4조 [ 피보험자의 범위 ]

제 5조 [ 특약내용의 변경 등 ]

## 제3관 보험료의 납입

제 6조 [ 추가납입특약 보험료의 납입 ]

제 7조 [ 주계약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해 해지된 특약의 부활(효력회복) ]

## 제4관 특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

제 8조 [ 계약자의 임의해지 ]

제 9조 [ 해약환급금 ]

제10조 [ 보험계약대출 ]

제11조 [ 추가납입 계약자적립액의 인출 ]

## 제5관 기타사항

제12조 [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]

[별표1]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

# 무배당 추가납입특약

##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

### 제 1조 [ 목적 ]

이 특약은 보험계약자(이하 “계약자”라 합니다)와 보험회사(이하 “회사”라 합니다) 사이에 주된 보험계약(이하 “주계약”이라 합니다)에 부가하여 주계약 보험료 이외 보험료의 추가 납입 및 적립을 위하여 체결됩니다.

### 제 2조 [ 용어의 정의 ]

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,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.

#### 1. 계약관계 관련 용어

가. 계약자 :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.

나. 보험수익자 :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.

다. 피보험자 :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.

#### 2.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

가. 연단위 복리 : 회사가 지급할 금액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원금+이자를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.

#### [ 연단위 복리 예시 ]

원금 100원, 연간 10%이자율 적용 시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2년 시점의 총 이자금액

$$\cdot 1\text{년차 이자} = \frac{100\text{원} \times 10\%}{\text{원금}} = 10\text{원}$$

$$\cdot 2\text{년차 이자} = \frac{(100\text{원} + 10\text{원}) \times 10\%}{\text{원금} \quad 1\text{년차 이자}} = 11\text{원}$$

$$\rightarrow 2\text{년 시점의 총 이자금액} = 10\text{원} + 11\text{원} = 21\text{원}$$

나. 평균공시이율 :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, 이 특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하며 평균공시이율은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([www.abllife.co.kr](http://www.abllife.co.kr))의 ‘공시실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다. 추가납입 계약자적립액 : 추가납입특약 보험료에서 부가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이 특약의 ‘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’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. 다만, 제11조(추가납입 계약자적립액의 인출)에 따라 추가납입 계약자적립액의 인출이 있을 때에는 해당 시점의 추가납입 계약자적립액에서 인출금액을 차감합니다.

라. 해약환급금 : 계약이 해지될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.



## 용어해설

### [ 해지 ]

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이나 또는 효력이 상실된 계약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거나 계약유지 의사를 포기하여 만기일 이전에 계약관계를 청산하는 것을 말합니다.

### [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]

보험회사의 기초서류 중 하나로서 보험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에 대하여 보험료, 해약환급금 등이 적정하게 계산될 수 있도록 산출 기초율을 사용하여 계산한 방법을 기재하는 서류입니다.

## 3.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

가. 보험기간 :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.

나. 영업일 :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, 토요일,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공휴일, 대체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.

## 4. 기타 관련 용어

가. 추가납입특약 보험료 : 이 특약 성립 후부터 보험기간 중 주계약 보험료 이외에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합니다. 추가납입특약 보험료는 “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”와 “수시추가납입보험료”로 구분됩니다. 다만, 주계약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는 해당 월의 주계약 보험료가 납입된 경우에 한하여 추가납입특약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습니다.

(1) “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”란 계약자가 이 특약 성립 후부터 보험기간 중 매월 정기적으로 납입할 수 있는 추가납입특약 보험료를 말합니다.

- 계약자는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, 변경 및 중지를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, 해당 내용은 신청일 이후 도래하는 익월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하기로 약속한 날부터 적용됩니다.
-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는 주계약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는 매월 주계약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에 주계약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, 주계약 보험료 납입기간 이후에는 계약자가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을 신청할 때 매월 납입하기로 한 날에 납입합니다. 다만, 해당 월에 납입하기로 한 날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납입하기로 한 날로 합니다.
- ‘나’목에서 정하는 추가납입특약 보험료의 납입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는 자동으로 납입중단됩니다.
- 해당 시점의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차회 이후의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를 납부할 때 미납입된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를 청구하지 않습니다.

(2) “수시추가납입보험료”란 계약자가 보험계약 성립 후부터 보험기간 중 수시로 납입하는 추가납입특약 보험료를 말합니다.

나. 추가납입특약 보험료 납입한도

보험기간 중 납입할 수 있는 추가납입특약 보험료(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와 수시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)의 납입한도는 보험료 납입기간동안 납입하기로 약정한 주계

약 보험료 총액의 100%이내로 하며, 추가납입 계약자적립액의 인출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납입특약 보험료 납입한도에 인출금액의 누계를 더한 금액을 납입한도로 합니다. 다만, 연간납입한도는 (주계약 월납 보험료 × 12 × 200%)로 합니다.

## 제2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

### 제 3조 [ 특약의 체결 및 소멸 ]

-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하고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.
- ② 이 특약의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.
  1. 주계약이 해지되거나 기타사유로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
  2.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
- ③ 제2항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회사가 적립한 당시의 추가납입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합니다. 추가납입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“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”(별표1 참조)에 따릅니다.
- ④ 제2항 제2호의 ‘사망’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.
  1.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: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.
  2. 관공서에서 수해,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: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.

### 제 4조 [ 피보험자의 범위 ]

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.

### 제 5조 [ 특약내용의 변경 등 ]

회사는 계약자가 주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이 특약의 추가납입특약보험료 납입한도 및 추가납입 계약자적립액도 같은 비율로 감액되며, 그 감액된 추가납입 계약자적립액은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.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9조(해약환급금)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.

## 제3관 보험료의 납입

### 제 6조 [ 추가납입특약 보험료의 납입 ]

추가납입특약 보험료는 이 특약 성립 후부터 보험기간 중 추가납입특약 보험료 납입한도 이

내에서 수시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주계약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는 해당 월의 주계약 보험료가 납입된 경우에 한하여 추가납입특약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습니다.

### 제 7조 [ 주계약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해 해지된 특약의 부활(효력회복) ]

-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(효력회복)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(효력회복)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(효력회복) 규정을 준용하여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(효력회복)을 취급합니다.
- ② 주계약의 부활(효력회복)을 청약한 경우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(효력회복)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.



#### 용어해설

##### [ 부활(효력회복) ]

특약의 효력이 상실된 후 다시 원 특약의 내용대로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특약을 되살리는 일을 말합니다.

## 제4관 특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

### 제 8조 [ 계약자의 임의해지 ]

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회사는 제9조(해약환급금)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.

### 제 9조 [ 해약환급금 ]

-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은 해지시 추가납입 계약자적립액으로 합니다.
- ②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,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. 해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“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”(별표1 참조)에 따릅니다.

### 제10조 [ 보험계약대출 ]

-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(이하 “보험계약대출”이라 한다)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②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,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.
- ③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.

### 제11조 [ 추가납입 계약자적립액의 인출 ]

- ① 계약자는 계약일부부터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보험기간 동안 보험년도 기준 연12회에

한하여 추가납입 계약자적립액(다만, 추가납입 계약자적립액에 대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제외한 금액)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습니다.

② 1회에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은 10만원 이상 만원 단위로 하며, 총 인출금액이 계약자가 회사에 실제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 및 추가납입특약 보험료의 총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

## 제5관 기타사항

### 제12조 [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]

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.

(별표1)

###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

(제3조 제3항 및 제9조 제2항 관련)

|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지급이자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추가납입<br>계약자적립액<br>(제3조 제3항) |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           | 보험계약대출이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        | 보험계약대출이율 + 가산이율(4.0%)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지급기일의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        | 보험계약대출이율 + 가산이율(6.0%)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지급기일의 91일 이후 기간                  | 보험계약대출이율 + 가산이율(8.0%)                        |
| 해약환급금<br>(제9조 제2항)          |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<br>까지의 기간 | 1년 이내 : 평균공시이율의 50%<br>1년 초과기간 : 평균공시이율의 40%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            | 보험계약대출이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- (주) 1.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일자계산하며, 회사가 보험금 및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할 때에는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내에서만 상기 이자를 적용하여 지급합니다.
2.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다만, 회사는 계약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로 이자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.
3.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.

|  설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|
| ‘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’란, 공정하고 정확한 보험금 지급을 위해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, 확인 등이 필요하여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경우로,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인정하는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합니다. |